

옥천군 공고 제2020-89호

##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  
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 
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1월 20일

옥 천 군 수

### 1. 자치법규명

-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2. 개정이유

-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일반 회계로의 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

### 3. 주요골자

- 특별회계 세출에 일반회계 전출금 조문을 추가(안 제3조제8호)

### 4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경제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384, FAX : (043)731-2913

가. 조례 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 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## 5. 붙임

-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##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”를 “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호(중전의 제8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8. 일반회계 전출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세입)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 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수입금</p> <p>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8. <u>기타</u>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에 필요한 경비&lt;제6호로부터 이동 2017.12.26.&gt;</p>	<p><u>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세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의</u> --</p> <p>제3조(세출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일반회계 전출금</u></p> <p>9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 례 명: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 화 번 호:

조 례 안	의 견